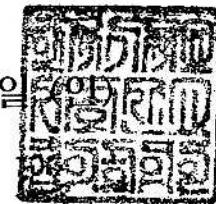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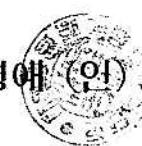
한국기독교사회선교협의회 공동대표 오충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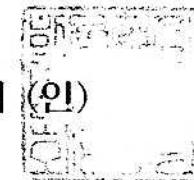
한국동성애자단체협의회 공동대표 임태훈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최영애 (인)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지은희 (인)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이경숙, 정강자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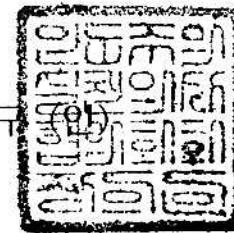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회장 신혜수 (인)



한국장애인연맹(DPI) 회장 송영욱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상임대표 김종구



정부 인권법안 국회통과 저지!
국민을 위한 올바른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
확대·개편대회 자료집

일 시 : 1999년 4월 29일 오전 10시
장 소 : 종로성당 3층 강당

〈시작하는 글〉

● 공추위 확대·개편대회를 맞이하여

지난해 9월 17일, 비민주적 인권법 입법추진과정을 바로잡고 국민들의 광범위한 의사를 수렴하는 투명하고 공개적인 과정을 통해 올바른 국가인권기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30여개 민간단체들이 힘을 모아 공추위를 결성한 이래 어느덧 8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동안 법무부는 유엔인권기준이나 외국의 입법례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거짓보고서를 작성하면서까지 법무부 산하의 약체기구로 인권위원회를 설치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추위 소속단체들의 열정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인권법 시안의 많은 한계와 문제점이 어느 정도 보완될 수 있었으며, 법무부의 의도도 쉽사리 관철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정이 협의한 인권법안이 지난 3월 30일, 마침내 국무회의까지 통과했습니다. 이에 인권활동가 30여명은 '인권'의 이름으로 반인권적 인권법안을 철회시키기 위한 연합단식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단식농성을 통해 점점 더 많은 국민들과 사회단체, 심지어 정치권에서까지도 인권법 문제에 주의를 촉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인권법안이 국회를 쉽게 통과하지는 못하도록 견제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추위는 인권위 설치논의를 인권이 실현되는 사회를 꿈꾸는 좀더 많은 사회단체와 함께 고민해나가야 했을, 이러한 전국민적 관심 속에서만 올바른 국가인권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음을 통감했습니다. 아니 이것은 바로 우리 공추위가 가장 중요하게 수행했어야 할 과제였습니다.

이에 우리 공추위는 '국민과 함께' 그리고 '국민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도록 공추위 조직을 광범위한 사회단체들을 망라하는 조직으로 확대·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전망 속에서 좀더 많은 국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고민하는 길을 걷기로 한 것입니다.

이러한 공추위의 뜻에 많은 사회단체들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이제 공추위는 노동·여성·장애인·인권·시민단체뿐 아니라 보건의료·종교·언론·교육·학술·환경·빈민·청년단체 등 70여개 사회단체들을 총망라하는 범사회적 기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반인권적 인권법안이 철회되고 전정 국민의 눈물과 한을 셧어줄 수 있는 인권기구가 설치될 때까지 공추위의 문은 모든 국민과 민간단체에 열려 있을 것입니다.

확대·개편대회에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추위 소속단체 총 69개

- 가톨릭가출청소년쉼자리전국협의회 [대표 교수산나]

-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표 최인순]
-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표 배강원]
-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대표 박이섭]
- 광주 인권지기 [회장 이동균]
- 국제 앰네스티한국지부 [대표 허창수]
- 노동인권회관 [소장 박석운]
- 동성애자 인권연대 [대표 권한대행 임태훈]
- 민족문제연구소 [대표 김봉우]
-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 단체연대회의 [대표 이창복]
- 민족화합불교추진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 명진]
- 민주개혁국민연합 [공동대표 이해학]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대표 성유보]
-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회장 박병섭]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최영도]
- 민주주의 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의장 오종렬]
-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공동의장 곽노현]
- 민주화 실천가족운동협의회 [상임의장 임기란]
- 법률소비자연맹 [총재 김대인]
- 불교인권위원회 [대표 진관]
-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대표 김진균]
- 성공회 대인권 평화 연구소 [소장 조희연]
- 실천불교 전국 승가회 [대표 청화]
- 언론개혁 시민연대 [상임 공동대표 김중배]
- 영등포 산업선교회 [총무 박진석]
- 외국인 노동자 대책 협의회 [대표 이금연]
- 우리 민족 서로돕기 불교 운동 본부 [집행위원장 법륜]
-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서준식]
-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상임 대표 김종구]
- 자주 평화 통일 민족 회의 [상임 의장 이창복]
- 장애 우권의 문제 연구소 [이사장 김성재]
- 전국 교직원 노동 조합 [위원장 이부영]
- 전국 노동 운동 협의회 [대표 공석]
- 전국 목회자 정의 평화 실천 협의회 [총무 정진우]
- 전국 민주 노동 조합 총연맹 [위원장 이갑용]
- 전국 민족 민주 유가족 협의회 [회장 배은심]
- 전국 불교 운동 연합 [대표 배영진]
- 전국 시민 단체연합 [상임 공동 대표 연제은 · 장기철 · 김형문]

- 전국NGO연합인권분과위원회 [위원장 최용]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공동대표 김승환]
- 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손봉호 · 김수규]
-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공동대표 현호월 · 임근정]
- 주한미군범죄근절을위한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문대골]
-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김진균]
- 진보정당창당추진위원회 [공동대표 권영길 · 이갑용 · 양영수]
- 침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표 오성숙]
-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 · 김종배]
- 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장 김형태]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공동대표 문규현]
- 청년진보당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창수]
- 포럼2001 [대표 안상종]
- 한국가톨릭사회교육협회 [대표 이금연]
-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회장 이정옥]
- 한국국제문제연구소 [대표 이창수]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재정]
- 한국기독교사회선교협의회 [공동대표 오충일]
- 한국기자협회 [위원장 조성부]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이원보]
-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소장 김세균]
- 한국동성애자단체협의회 [공동대표 임태훈]
-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회장 정길화]
-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최영애]
-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지은희]
-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정강자]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회장 신혜수]
- 한국유권자운동연합 [상임공동대표 김민하]
- 한국장애인연맹 [회장 송영욱]
- 한국청년연합회(준) [준비위원장 이인영]
-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세중]

〈경과보고〉

●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주요 경과

93년 6월	비엔나 유엔세계인권대회에 참여한 한국 민간단체공대위 - 정부에 인권법 제정과 국가인권기구 설치를 요청
97년 11월	김대중 대통령 대선공약 발표 - 인권법 제정 및 '국민인권위원회' 설립
98년 3월	새정부 100대 과제 발표 - 인권법 제정 및 '국민인권위원회' 설립 공표
5월	국제앰네스티 -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에 관한 권고안" 채택 및 발표 (이후 국제앰네스티는 현재까지 여러 차례 공개서한, 성명서 등을 발표하면서 줄곧 독립적이며 실효성 있는 국가인권기구 설치를 촉구해왔음)
9월 7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 포럼에 민간단체대표단 파견
9월 17일	30여개 민간단체가 참여한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 추진위원회' (이하 공추위) 결성
9월 18일	공추위 대표단, 박상천 법무부 장관 면담 - 투명하고 민주적 입법과정 거칠 것을 요구
9월 25일	법무부 '인권법' 시안 발표/ 공추위, 대한변협 등 법무부안에 대한 비판성명서 발표 - 국가기구로 인권위원회를 설립하고 민주적 입법과정 보장할 것을 촉구
10월 14일	인권법 관련 제1차 당정협의 - 법무부의 '법인안'과 국민회의의 '국가기구안' 사이의 입장 차이로 결렬
10월 16일	법무부, '인권법 공청회' 개최
10월 19일	브라이언 버드킨(Brian Burdekin, 유엔인권고등판무관 특별자문관, 국가인권기구 유엔전문가)과의 간담회 개최 - 버드킨, 법무부 시안이 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보장하기 힘들 것이라는 입장 표명
10월 23일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김대중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에게 제1차 공개서한 송부 - '법무부안'이 독립성과 실효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
10월 29일	김대중 대통령, 시민사회단체 대표 초청 간담회 개최 - "인권법다운 인권법 만들 것"이라고 약속
11월 5일	김대중 대통령, "유엔권고안에 따라 인권법안 만들라"고 지시
11월 6일	공추위 '인권위원회법'(안) 마련/ 공청회 개최
11월 27일	법무부, 인권법 제1차 수정안 발표/ 공추위와 국제앰네스티, 연이어 법무부 수정안 역시 인권위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비판 성명

- 11월 28일 인권법 관련 제2차 당정협의
- 법무부의 법인안과 국민회의 국가기구안 대립, 또다시 결렬
- 98년 12월 8일 강만길·고은·김관석·김성수·김찬국·박형규·서영훈·유현석·이돈명·이세중·이효재·한원상 등 민주화운동원로 12인, '독립적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를 당부하는 대통령 건의문 발표
- 12월 9일 김대중 대통령, 청와대에서 국민회의·자민련 정책위의장, 법무부장관을 참석 시킨 가운데 당정협의 주재 - 당정간 입장차이로 조율 실패/ "민간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국민회의와 자민련 양당 단일안 마련하고 당정협의 거칠 것" 지시
- 12월 31일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 공주위 대표단 초청 간담회 개최 - 2월까지 인권법 제정 마무리짓기로 약속/ 국가기구로 인권위를 설치한다는 당론 재확인
- 99년 1월 26일 박주선 청와대 법무비서관, 국가인권기구와 법무부 인권법안에 대한 유엔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다며 뉴욕출장/ 추후 유엔전문가의 의견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법무부안을 지지하는 보고서를 작성했음이 드러남/ 추후 공주위, 박주선 법무비서관의 해임 촉구 논평 발표
- 2월 9일 인권법 관련 제3차 당정협의 개최 - 법무부 제2차 수정안 제시/ 당정간 입장 차이로 또다시 결렬/ 공주위, 국제앰네스티가 연이어 법무부 2차 수정안 비판
- 2월 19일 공주위 국민회의 당시앞 촉구 집회 개최
- 독립적 국가인권위 설치 촉구/ 독립적이고 실효성있는 국가인권위 설치를 촉구하는 대통령건의문 송부
- 2월 22일 국제앰네스티, 김대중 1년 집권 평가 성명 - 독립적 국가인권위 설치 촉구
- 2월 24일 김대중대통령 취임1주년 기자회견 - "법무부안 채택않고 정부로부터 자유로운 민간기구로 인권위 설치하겠다"는 입장 발표
- 3월 2일 공주위 대표단, 이기문 인권위원장 면담하며 인권위 설치논의의 공론화 요구
- 3월 10일 김원길 국민회의 정책위의장, 공주위 대표단에게 "인권위 설치논의의 공론화하고 민간단체와 협의해나가겠다"고 약속
- 3월 15일 김원길 정책위의장 경질/ 이후 장영철 신임 정책위의장 취임
- 3월 22일 당정협의 개최 - 법무부 제3차 수정안 제시/ 법무부와 국민회의, 제3차 수정안을 일부 수정한 채 당정협의안 기습 타결
- 3월 23일 공주위, "민간단체와의 약속 저버리고 인권법안을 밀실 날치기 처리"한 국민회의 비판, 인권위 독립성·권한 미흡 지적/ 정책위의장실 항의방문
- 3월 25일 법무부장관, 대통령에게 업무보고/ 대통령, 법안증 법무부장관 개입부분 수정·"민간단체 대표들과 장관이 직접 만나 의견을 조율하라"고 지시
- 3월 26일 공주위, "날치기 당정협의 규탄집회" 개최/ 공주위 대표단 정책위의장 면담

	3월 26일	법무부, 인권법최종안 그대로 차관회의 상정/ 법안 통과
99년	3월 29일	유가협, "인권법 기만이다.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하라"며 삭발식 단행
	3월 30일	공주위, "인권위 독립성·권한 강화요구 및 국무회의 상정 저지 집회" 개최
	3월 30일	인권법안 국무회의 통과
	3월 31일	민주화운동원로 30여명, "인권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4월 7일	인권활동가 30여명, "정부 인권법안 철회와 인권법 재논의"를 촉구하며 일주 일간 연합단식농성 돌입
	4월 8일	법무부, "정부의 인권법(안)에 대한 공주위의 성명, 과연 옳은가"라는 제목의 홍보자료를 통해 "민간단체의 주장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며 비난
	4월 9일	국제앰네스티, 국제고문방지기구(World Organization Against Torture), 로버트케네디주모인권센터(Robert F. Kennedy Memorial Center for Human Rights) 등 12개 국제인권단체, "인권법 제정과정의 투명성과 민간 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촉구하는 성명 발표
	4월 12일	대한변협, "인권법 이대로 좋은가" 공청회 개최/ 참석자들 대부분, 정부법안의 문제점 지적
	4월 12일	유엔인권위 참가 민간단체대표단, 제네바에서 브라이언 버드킨과 메리 로빈슨 유엔인권고등판무관 면담, "한국의 인권법 제정과정이 투명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인권위가 약체기구화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 표명
	4월 16일	공주위, "인권법안 국회 상정 저지" 결의대회 개최
	4월 19일	공주위 대표자회의, 공주위 확대·개편하고 운동의 대중화 지향하기로 결의
	4월 19일	대한변협과 공주위, 국회 법사위에 인권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4월 22일	인권법안 국회 법사위 상정/ 여야의원 대부분이 정부안의 문제점 지적, 법사위 제1소위 심의에 회부하기로 결정(*제1소위 구성의원 : 최연희(위원장), 박현기, 정형근, 조찬형, 함석재)
	4월 22일	공주위, 인권법안 국회통과 저지 결의대회 개최
	4월 29일	공주위 확대·개편대회 개최

〈조직개편안〉

● 새로운 조직구성

1. 개편의 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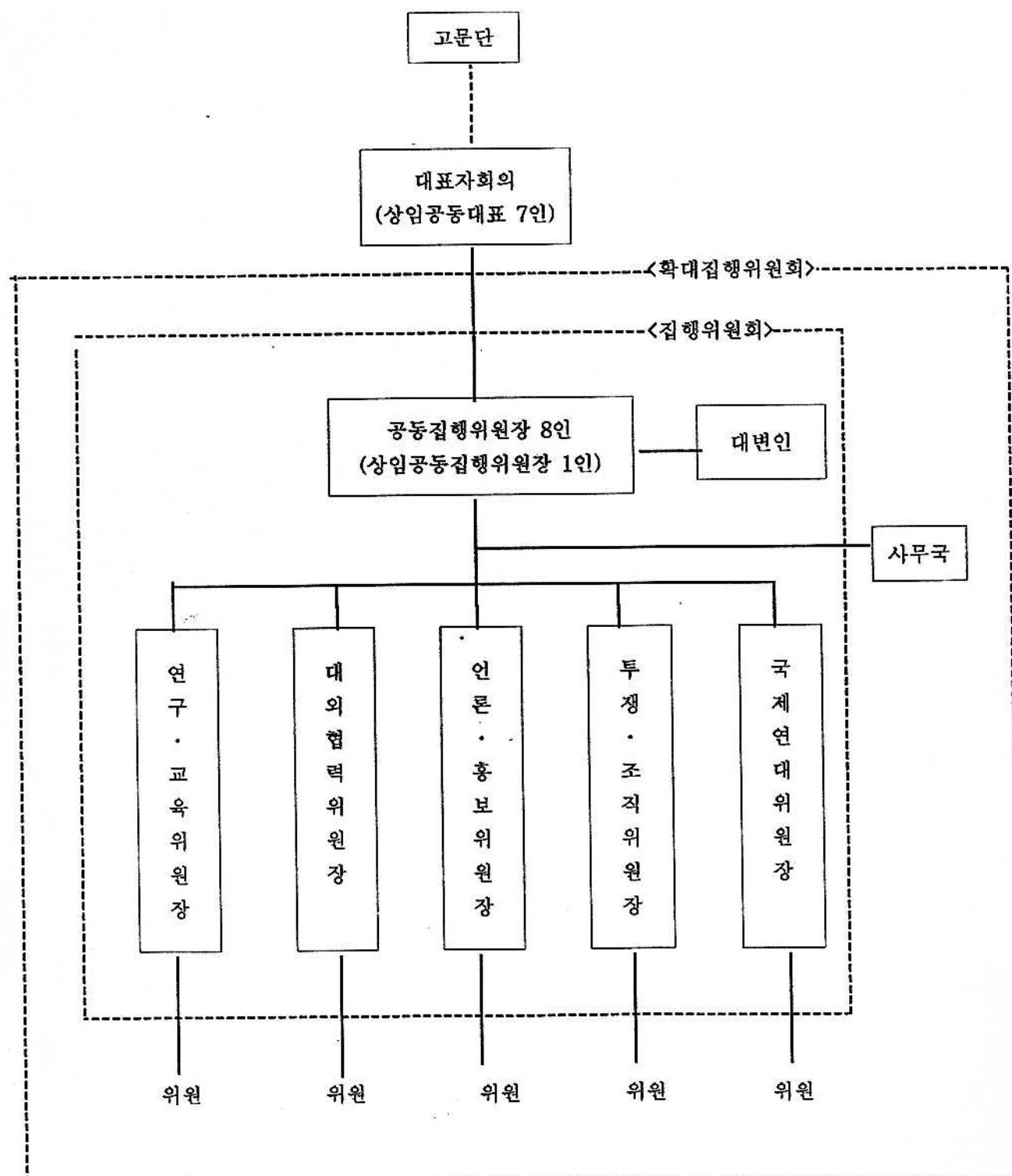
- ① 고문단 신설 - 대중에게 신뢰감과 확신을 줌으로써 운동의 대중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운동의 권위를 높인다.
- ② 상임공동대표 (7인) 신설 - 대규모 대표자회의의 공동화를 막고 최고 의결기구를 기동적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상층부 대외협력사업(정치권 등 로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단위의 존재가 필요하다.
- ③ 공동집행위원장 (8인-이 중 1명은 상임) 확대 - 소수의 집행위원장에게 지워지는 과부하를 분산시킨다. 조직규모에 상응하는 확대가 필요하다.
- ④ 대변인 (1인-공동집행위원장 겸임) 신설 - 성명서, 논평의 적시 발표를 보장하기 위하여 신설한다.
- ⑤ 5개 분과위원회 신설 - 과거 소수에게 집중되었던 부하를 분산시킴과 동시에 각 부분 활동의 전문화·고도화를 꾀한다. 분과위원회는 연구·교육 /대외협력 /언론·홍보 /투쟁·조직 /국제연대 위원회로 구성된다.
- ⑥ 집행위원회 범위 축소 - 과거 집행위원회의 비효율성과 공동화 형상을 시정하고 보다 기동적인 논의구조를 형성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가 책임의식 있는 사업 책임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축소, 재편성한다. 집행위원회는 상임공동집행위원장 1인 /공동집행위원장 7인 / 대변인 1인 /분과위원장 5인으로 구성된다.
- ⑦ 확대집행위원회 신설 - 가급적 고르게 소속 단체 실무자들이 참가하는 분과위원회 위원들 (각 3~8 명)이 확대집행위원회에 참가함으로써 비교적 중요한 사안의 논의에 많은 단체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길을 마련한다. 확대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 14인과 각 분과 소속 위원 모두 (약 25명)로 구성된다.
- ⑧ 사무국 신설 - 잡무를 서로 미루거나 '눈치보기' 현상을 없애기 위하여 분명히 인권운동사랑방에 서 담당한다.

2. 인선안

- ① 고문 : 20명 확정 (별도 명단 참조. 추가 추대도 가능함)
- ② 상임공동대표 : 최영도 (민변)/ 지은희 (여연)/ 임기란 (민가협)/ 이재정 (한교협 인권위)/ 성유보 (민언련) 외 2인
- ③ 공동집행위원장 : 곽노현 (민교협)/ 박원순 (참여연대)/ 신혜수 (여성의 전화)/ 최영애 (성폭력상담소)/ 윤종현 (민변) 외 3인
- ④ 상임공동집행위원장 : 공동집행위원장 중 호선
- ⑤ 대변인 : 공동집행위원장 중 호선
- ⑥ 연구·교육위원회 : 조용환/ 차지훈/ 유선영/ 배경내/ 이창수 외 5-6명
- ⑦ 대외협력위원회 : 서준식/ 임홍기 외 1명

- ⑧ 언론·홍보위원회 : 남규선 외 언론관련단체 2-3명
- ⑨ 투쟁·조직위원회 : 정종권/ 이윤주/ 최민/ 임태훈/ 채은아 외 3-4명
- ⑩ 국제연대위원회 : 차미경/ 조시현/ 윤정숙 외
- ⑪ 사무국 : 서준식/ 배경내

3. 조직표



■ 공추위 고문 명단(총 20명)

강만길 김관석 김금수 김동완 김상근 김승훈 리영희 박순경 박용길
박정기 박형규 서영훈 유현석 이돈명 이소선 이해동 이효재 조준희
한상범 한완상

〈사업계획안〉

● 공추위 향후 활동계획(안)

1. 사업 기조

법무부 안을 기초로 한 정부의 '인권법' 안이 국회 법사위원회에 상정된 현 시점에서 공추위는 무엇보다도 이 법안의 국회 통과 저지를 지상과제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로 확대된 역량을 바탕으로 거리 캠페인, 집회 등 강공을 펼쳐야 하며, 둘째로 국제연대를 통한 외부로부터의 정치권에 대한 압박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셋째로 이 힘에 떠받쳐진 집중적인 정치권 로비를 진행시켜야 한다.

한편 이른바 '인권법' 안이 법사위원회 소위원회로 회부되어 다음 회기 (5월 말 예상)로 넘겨진 조건에서 약 한 달 동안 운동의 대중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교육, 홍보사업에 많은 역량을 쏟아야 한다.

이런 모든 활동에 일관성과 확신을 부여하기 위한 연구작업이 밀도 있게 진행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얼마간의 엉성함을 면치 못하고 있는 민간단체 법안을 짜임새 있게 완성하는 일이 시급하다.

2. 각 분과위원회별 사업계획 지침 (안)

① 연구·교육위원회

*연구: 민간단체 안 완성 [5월 15일 경까지] → 공청회 → 입법 청원 [5월 20일 경]

*교육: 공추위 소속단체 대상 설명회 [1차- 5월 초, 2차-5월 10일 경]

홍보책자 '국가인권위원회,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개정판 제작 [5월 20일까지]

② 대외협력위원회

*국회 법사위 논의 진행상황 철저히 파악

*법사위원장 (목요상), 법사위 제1소위 위원장 (최연희)에 대한 로비

*한나라당 (이부영, 이신범, 황우여 등)에 대한 로비

*국민회의 소장 의원들 및 의과조직 (국민정치연구회 등)에 대한 로비

*민주화운동 원로의 대통령 면담 성사

*교수 성명 도출 및 설문조사의 타당성 검토

③ 언론·홍보위원회

*주간지 혹은 월간지에 특집지면 확보를 위하여 최대 노력

*교수, 법조인들의 칼럼, 평론, 논문 등을 조직

*법조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

*개정판 홍보책자 전국 배급

*언론사 로비 대상인물 명단 만들기 및 공추위 간부와의 대화를 조직

④ 투쟁·조직위원회

*5월 한 달 동안 꾸준한 캠페인

- '인권법안 국회통과 저지 자전거 시위' / '국회 인권의 나무 심기 퍼포먼스' 등

*공추위 소속단체의 결속 강화 도모

*차기 국회 회기에 맞추어 집중 강공

⑤ 국제연대

*5월 중 News Letter 2-3회 발간. 외국 인권단체 및 UN 전문가들에게 설명작업, 지지성명 도출.

▶ 그외 각 분과위원회별 논의를 거쳐 현 시기 가장 필요한 사업을 구체화시킨다.

〈결의문〉

올바른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을 위하여 우리는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인권유린의 주범들이 밀실에서 ‘인권법’안을 만들어냈다. 수많은 국민의 불에 눈물을 흐르게 했던 반 인권세력들이 인권옹호자의 탈을 쓰고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주도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물상식한 현실에 맞서 8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처절한 투쟁을 전개해왔다.

인권위원회를 자신의 영향하에 두고 이를 최대한 약체화시키려는 법무부의 노골적인 의도는 지난 3월 30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국회 법사위원회에 상정된 이른바 ‘인권법’안 속에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 있다. 우리는 오늘 이 기만적인 ‘인권법’안의 분쇄를 목표로 새롭게 우리의 대오를 확대·정비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국회 법사위원회에 상정된 정부의 이른바 ‘인권법’안을 분쇄하기 위하여 계속 투쟁의 범위를 넓히고 강도를 높여 나갈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온 국민의 희망이어야 할 국가인권기구 모습을 왜곡함으로써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법무부 검찰세력과의 투쟁을 멎추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반 인권주의자의 본색을 유감없이 드러낸 박상천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소리높이 요구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국가인권기구가 올바르게 설치되기 위하여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임을 깊이 통감하면서 우리의 운동을 과감히 대중화시킬 것을 결의한다. 이번 공추위의 확대·개편작업을 발판으로 우리는 많은 국민들과 함께 노력과 희망을 나누면서 독립적이며 실효성 있는 국가인권기구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1999년 4월 29일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

〈자료 1〉

• 정부 인권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1. 최소한의 민주주의 절차도 외면한 법안이다.

메리 로빈슨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국가인권기구의 위상과 권한 못지 않게 인권위원회를 만드는 과정이 얼마나 투명하고 민주적인가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인권기구를 설치하는 과정이 투명해야 하고 인권 기구에 국민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인권기구가 제구실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우리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어떠한 논의의 틀도 마련하지 않은 채 인권법 최종안을 확정해버렸고,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통과시켜 버렸다. 이는 최소한의 민주주의 절차도 외면한 밀실타협의 산물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2. 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문제

1> 인권위원회는 법무부의 보조기구에 불과하다!

① 법무부는 인권법안에 따라 설립될 인권위원회가 독립기구임을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은 △인권위가 인권업무에 대하여 국가기관의 활동을 보완하고(제2조제2항), △인권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으로 법무부를 명시(제6조)함으로써, 인권위의 성격과 위상이 법무부의 인권업무를 보조하는 기구에 불과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인권위의 관계도 상하관계로 설정되고 있다.

② 인권위의 성격 규정뿐 아니라 실제 그 활동 및 운영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인권위에 대해 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위원회가 하는 모든 권고나 의견표명, 조치결과의 통보내용 등을 모두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제65조) △인권위가 대통령과 국회에 “전년도 활동상황에 제한”된 연례보고서를 제출하는 데 반하여 법무부가 인권위의 보고서를 토대로 또다시 종합적인 인권상황 분석과 개선대책을 대통령에게 보고(제6조제2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는 법무부가 인권위의 상위기관으로서 인권위의 활동을 감사(監查)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며, 직·간접적으로 인권위의 업무에 간여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인권위의 설립과정을 법무부장관이 독점한다!

인권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못지 않게 최초 설립을 누가 주도하는가가 인권위의 독립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이 인권위의 설립과정을 독점하고 있어 인권위의 독립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① 설립위원과 설립정관의 문제 : 인권법안에 의하면 △“국민인권위”的 업무와 집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게 될 설립정관을 법무부장관이 추천하여 대통령이 위촉한 7명의 설립 위원으로 하여금 작성하도록 하고 △작성된 최초의 설립정관 역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권위 조직의 뼈대를 만드는 설립위원과 인권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을 설립정관을 모

두 법무부장관의 영향력 아래 두겠다는 것이다. 진정으로 독립적인 인권위를 만들려면 설립과정을 정부가 주도해서는 안되며, 정부의 영향력 아래 놓여서도 안된다. 이는 방송위원회의 개혁논의 과정에서도 익히 보아온 교훈이다. 설립위원은 대통령이 직접 인권단체등 민간단체들과 민간 인권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의 제·개정 문제 : 인권법안은 인권위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모두 규정하지 않고, 13가지 정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아래 참조). 이중 상당 부분은 조사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사항인데, 대통령령에 어떻게 규정되는가에 따라 인권위가 수행하는 조사작업의 실효성이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인권법안은 법무부장관의 예산통제권을 삭제하고 인권위가 직접 국가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예산상의 독립성이 크게 보장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인권위 예산에 대한 요구절차, 예산의 교부 및 그 사용에 관한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예산상의 독립성 역시 대통령령에 의하여 얼마든지 침해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대통령령의 제·개정 과정이 전적으로 법무부장관의 주도로 이루어짐으로써 인권위의 조직과 운영,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법무부장관이 장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권위의 조직과 운영, 예산 등 실질적인 중요성을 갖는 사항을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그 대통령령을 법무부장관이 기초하게 되어 있으므로 법안의 내용과는 별도로 법무부가 사후에 얼마든지 자신의 의도에 따라 대통령령을 제·개정함으로써 왜곡된 형태의 인권위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대통령령에 의한 법정신의 왜곡”은 우리가 과거 익히 경험해 왔던 바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 중 인권위 조직과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부수적인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

1. 다수인보호시설 정의(제3조 제4호)
2. 지부설치절차(제13조 제2항)
3. 기타 정판기재사항(제14조 제1항 제11호)
4. 인권위 등기절차(제15조 제1항)
5. 구금보호시설 시찰시 수용자면담절차(제17조 제2항)
6. 법에 정해진 사항 이외의 인권위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제36조)
7. 정부출연금(인권위 예산)의 요구, 교부 및 사용에 관한 사항(제38조 제4항)
8. 조사를 하는 구체적인 절차(제47조 제1항)
9. 실지조사시 진술청취절차(제47조 제3항)
10. 실지조사시 자료제출절차(제47조 제4항)
11. 조정절차(제53조 제4항)
12. 피해자의 법률구조 신청시 법률구조의 절차, 내용 및 방법(제56조 제2항)
13. 법에 정해진 사항 이외의 인권위의 조사 및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제67조)

3. 인권침해 조사 및 구제 문제

1> 조사대상이 광범위하게 제한되어 있다!

인권법안은 인권위의 조사대상으로 수사기관 등에 의한 생명·신체의 자유에 관한 침해행위 등 8가지 인권침해행위와 제한적인 차별행위로 한정하고 있다. 인권법안이 이처럼 인권위의 조사범위를 매우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대상 이외의 인권침해에 관한 구제신청이 들어오면 자신의 관할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바로 각하할 수밖에 없다. 이는 모든 인권의 불과분성을 고려할 것을 권

고하는 있는 유엔의 지침에도 위반되며, 외국의 입법례에도 이러한 규정은 극히 찾아보기 힘든 이례적인 것이다.

인권위의 조사대상이 되는 8가지 인권침해행위는 기존 법률로도 이미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불법행위이다. 이것만을 인권위의 조사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인권위의 역할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권위가 특별히 요청되는 이유는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행위는 아니지만, 혹은 합법적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볼 때 인권침해를 놓고 있는 “회색영역”의 인권침해 문제를 조사하여 피해자의 구제하고 제도의 개선을 꾀하고자 하는 데 있다.

예를 들어 △무차별 불심검문 △생존권을 무시하는 노점상 단속 △필요한 의료제공을 거부 또는 지연하거나 부적절한 의료를 제공하는 행위 △철거폭력배들의 폭력행위 방조 △다수인보호시설에 대한 부적절한 감독 △재소자들의 집필권 또는 도서 열독권의 침해 △재소자의 청원권 무살 △집회·시위의 자유의 임의적 제한 등 다양한 기본권 침해문제들을 아예 조사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인권위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인권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제도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할 기능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것이다.

차별행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인권법안은 차별금지사유를 15가지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차별을 금지하는 영역도 고용관계, 재화·용역 공급이나 이용관계, 교육, 직업훈련 관계 등 사적인 영역으로만 제한하고 있다. 이 경우 “사상” 또는 “정치적 견해”를 근거로 한 준법서약제도 등 국가권력에 의한 차별문제는 전혀 포괄될 수 없다. 또한 차별금지사유로 행형기록(전과), 성적지향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다양한 차별행위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열거된 기준과 열거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차별행위를 위원회가 제대로 조사·구제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다. 예를 들어 국가를 포함한 사용자들이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정한 최소한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보아 조사와 처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실체적인 규정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않다.

2> 조사권이 광범위하게 제한되어 있다!

① 조사권의 실효성 미약 : 조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조사방법의 우선순위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인권위의 조사권이 상당히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조사대상기관이 인권위의 출석요구나 자료제출 요구 등에 응하지 않거나 실지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사후적으로 과태료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75조 1항) 일단 조사가 거부되었을 때 인권위의 조사를 관철시킬 방법이 전혀 없다. 당사자가 과태료 납부를 감수하고서라도 조사를 거부할 경우, 인권위의 조사가 처음부터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설사 관계자가 조사에 응한다고 하더라도 진술이나 제출된 문서, 자료, 물건, 그리고 장소의 상황에 관하여 진실을 담보할 아무런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특히 인권위는 관련자의 “진술을 청취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에 관련자들이 거짓 진술을 하거나 출석하여 진술을 거부할 경우 인권위의 조사는 난관에 부딪칠 것이다. 실지조사를 할 때도 수용자나 재소자를 비밀리에 접견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 실지조사를 통해 실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② 광범위한 조사거부권, 넘쳐나는 조사거부사태 : 국가기관이 조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조사를 거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거나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인권위가 조사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은 것이다. 조사를 받아야 할 기관의 장이 위와 같은 거부사유가 있다면서 확인서 한 장만 써서 인권위에 제출하면 인권위의 조사는 사실상 원천봉쇄될 수밖에 없다(제48조). 특히 위의 조사한계 사유는 너무나 추상적이어서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며, 조사대상기관의

장이 종이 한 장만 내밀면서 마음대로 조사를 거부한다 해도 인권위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

인권위가 조사할 수 있는 “인권침해행위”는 거의 모두 수사기관이나 구금시설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인권위가 조사상 필요한 자료나 물건 가운데 위의 조사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아보기 힘들다. 더구나 그 판단도 조사대상 기관이 스스로 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막연하고 광범위한 이유로 조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거부권이 남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민사재판에서 관련 형사기록을 증거로 제출하기 위하여 검찰에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검찰로부터 타인의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증거신청을 한 당사자가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기록 외에는 어떠한 문서도 협조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실정을 감안해 보라. 인권위가 조사대상기관이 저지른 인권침해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때, 이에 순순히 응하고 적극 협조할 기관이 있을 리 만무하다. 이렇게 되면 조사거부사태가 넘쳐날 수밖에 없고, 인권위의 활동 자체가 국민적 신뢰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좋은 평계거리 를 제공하고 있으면서 특히 의문사와 같이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국가기관의 이해관계가 달려 있는 사안을 조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에 다름 아니다.

인권위의 조사권 역시 심각하게 제약되어 있어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③ 진정의 각하로 인권위 조사 방해 : 진정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한 사유 가운데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수사가 진행중인 때에는 진정을 각하하게 하고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게 한 조항’(44조 1항 8호, 2항)도 조사의 실효성을 제한하는 장치이다. 특히 법안은 일단 조사가 시작된 후에도 나중에 각하사유가 생기면 진정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44조 3항) 수사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인권위의 조사를 봉쇄할 수 있게 해 놓았다. 왜냐하면 인권위의 조사대상이 되는 “인권침해행위”는 기본적으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인권위가 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언제든지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인권위는 진정을 각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사이 증거가 인멸·은폐·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인권위의 조사 시효 1년을 초과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 인권위 조사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3> 인권위 결정, 따라도 그만 안따라도 그만!

인권위가 위와 같은 난관을 극복하고 조사를 마친 후에도 내릴 수 있는 구제조치도 실효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기 힘들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노동위원회도, 여성특위 산하의 남녀차별개선위원회도 시정명령권을 갖고 있는 데 반해 인권위는 시정권고밖에 내릴 수 없다. 시정권고로도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인권위가 내리는 시정권고는 인권위가 합의와 조정을 시도하였는데도 안되는 경우에 최종적으로 내리는 결론이다. 그런데 합의도 안되고 조정에도 안따르던 가해자에게 ‘따라도 그만 안따라도 그만’인 시정권고를 내렸다고 하여 이를 따를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물론 피진정인의 소속기관과 감독기관의 장에게 일정한 권고를 할 수 있고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 고발과 수사의뢰를 할 수 있지만 이것으로 피해자의 권리가 회복되지는 않는다. 더구나 어려운 과정을 거쳐 인력과 시간을 들여 인권침해사실을 밝혀내도 가해자가 승복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원점으로 되돌아가 다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다른 구제수단을 취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소모적이며 인권기구의 설치목적에도 위반되는 것이다.

인권위는 수사기관과 같이 인권침해행위자에게 벌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자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長)에게 징계를 요구하는 등 그에 따르는 옹당한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고충처리인권위의 예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해자가 메아리없는 권리지만을 가지고 감사원, 법원, 변호사사무실, 민간단체 등

또다른 기관을 전전하게 될 것이며, 인권위가 이러한 사태에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다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신뢰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4. 인권교육과 인권정책 기능의 실효성 문제

인권위의 역할 가운데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구제 기능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이 인권정책에 대한 자문과 인권교육 기능이다. 인권관련 정책자문과 인권교육 기능은 국가의 인권정책을 올바로 수립함으로써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의식과 문화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권법안은 인권위가 정책과 교육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어 그 실효성이 매우 의문스럽다. 인권위가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권관련 법률과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을 권고할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권한을 갖고, 어떠한 절차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가 전혀 명확하지 않다. 또 국제인권법과 기준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지 못한 법원 또는 현법재판소가 전국민의 중대한 인권문제가 관련된 재판을 할 때에도 인권위는 그 과정에 참여하여 사법부에 전문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인권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인권법안은 교육부의 역할로 학교교육에 인권교육을 도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기는 하다. 이도 물론 중요한 인권교육이지만 인권교육이 여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인권교육은 인권침해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사회적 약자들과 인권침해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검찰·경찰·교도관 등 법집행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인권의 내용을 가르치고 인권을옹호하는 가치와 태도를 길러내며 인권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인권법안에 따라서는 인권위가 어떠한 절차에 따라 어떠한 방법으로 이러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지 전혀 짐작할 수 없다.

5. 과거청산의 과제 문제

향후 설치될 인권위가 국민적 신뢰를 획득하느냐의 여부는 과거청산의 과제, 특히 의문사 진상규명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로 인해 인권후진국이라는 부끄러운 꼬리표를 달고 있는 우리나라가 이제라도 인권위를 설치함으로써 인권선진국으로 도약하고자 할 때, 과거청산의 과제를 이루어내지 않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권위 설치가 갖는 역사적 의미일 것이다.

더구나 현 정부가 인권법 제정을 통해 의문사 진상규명을 약속해 왔던 만큼, 그리고 특별법 제정 가능성이 뚜렷하지 않는 현 마당에서 인권법안에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칙을 두어 과거청산을 이루어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의문사 진상규명이라는 과거청산에 관한 특별한 장을 하나 더 둘으로써 인권위 출범 초기에 이 문제를 확실히 매듭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현 인권법안으로는 의문사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현 인권법안은 조사대상으로 수사기관뿐 아니라 모든 정부기관의 공무원에 의해 저질러진 “사람에 대하여 폭행·협박·고문 등 가혹한 행위를 하거나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제40조).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 첫째, 조사대상을 수사기관과 정부기관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의 과정에서 기업주, 사학재단 등에 의해 자행된 의문사는, 애초에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 버렸다. 둘째,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였을 때만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의 가능성 자체가 그리 높지 않다. 셋째, 인권위가 조사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1년이 경과했을 경우 진정을 각하하도록 함으로써 대부분의 의문사가 진정이 되어도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의문사의 대부분은 사고사나 자살로 위장

되는 경우가 많아 사건 발생 당시에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고, 특히 군대내 의문사의 경우 함께 군복무를 한 동료들이 제대한 이후에야 증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년이라는 시효를 의문사 진상규명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전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이다. 넷째, 조사의 한계가 너무나 광범위하여 인권위의 조사가 원천봉쇄될 가능성성이 매우 높다. 수사기관등이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조사를 관철시킬 아무런 방도가 없는 것이다. 다섯째, 인권위의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 수사기관 등에서 인권위 조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체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 인권위는 진정을 각하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수사기관등이 시간을 끌면서 증거를 왜곡·인멸·은폐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여섯째, 중인이나 공범자의 양심선언시 보호규정이나 면책규정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증언에 나설 가능성이 없게 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 인권법안으로는 의문사 진상규명을 제대로 해낼 수 없다. 위에서 지적한 각종 한계들은 인권위가 법인의 위상을 갖는 한 극복되기 어려운 문제로 보인다. 한낱 법인에 불과한 인권위에 과도한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법인인 인권위가 국방부나 수사기관 등 강력한 국가기관을 상대로 제대로 조사를 수행하기를 기대하는 것부터가 어불성설이다.

6. 법인의 위상 문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 “인권법”안에 따르면 인권위는 법무부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법무부의 인권업무를 보충하는 보조·하위 기구에 불과하여 결코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없다. 또한 인권정책과 인권교육 기능은 물론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조사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권한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조사대상이 되는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的 개념이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조사권의 한계까지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문제는 인권위를 법인으로 설립하는 한 피할 수 없는 문제로 보인다.

법무부는 인권위를 법인으로 설립할 것을 고집하면서, “인권위는 기존 국가기관의 인권보장기능에 허점이 있는 부분, 즉 ‘틈새(shortcomings)’를 보충하기 위한 기구”이며 “인권보장에 관한 제1차적·최종적 책임은 국가기관에 있고, 이를 감시·보충하는 책임만 인권위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정부조직법상 “인권옹호”的 주무부서이며, 이러한 법무부의 기능을 보충하는 기구로서 인권위를 “법인”으로 설치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또한 법무부는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민간감시가 절실하다는 이유로 인권위를 민간특수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인권위가 기존 국가기관의 역할을 대체할 수는 없으며, 대체해서도 안된다. 모든 국가기관의 본질적 책무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무부의 주장은 인권위의 역할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유엔의 원칙에서 인권기구가 기존의 국가기구와 “보완적(complementary)”인 기능을 한다는 말은 기존의 국가기구가 “제1차”적 기능을 맡고 인권기구가 “제2차”적 혹은 부수적인 기능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인권위는 다른 국가기구가 제도적·현실적 한계 때문에 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고 있는 인권보장 역할, 즉 법률과 제도, 정책에 관한 자문기능, 교육기능,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기능 등을 총체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인권보장 의무를 보다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개념의 국가기구인 것이다. 인권위의 본질적 역할은 그 자체로서 국가의 기능으로 보아야 마땅한 것이다. 더구나 인권위가 다루어야 할 인권의 개념도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전반을 다 포함하는 것이므로, 인권위의 업무가 결코 법무부가 수행하는 인권업무를 보조하는

차원에 한정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도 민간차원이 아닌 국가차원에서 인권을 보다 더 잘 보장하기 위한 기구로서, 국제사회와 민간단체들의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국가 내에서 다른 국가기관을 감시·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국가기구로 인권위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법무부가 주장하는 국가에 대한 민간감시의 필요성은 이미 민간단체들이 수행하고 있는 바이며, 정부가 나서서 민간기구를 하나 더 만들 필요는 없다고 본다. 더구나 정부의 출연금을 받는 민간법인이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민간단체들처럼 국가기관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다고 보는 것도 크나큰 오해이다. 정부의 후원금을 받는 민간단체들이 민간단체라기보다는 관변단체로 취급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인권위를 국가기관의 역할을 보완하는 하위 보조기구로서만 파악하고 있다. 그에 반해 일개 행정부처에 불과한 자신은 모든 국가기관을 통괄하여 국가 인권정책의 중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인권위 설치를 통해 인권옹호를 빌미로 법무부의 위상을 과도하게 격상시키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모든 국가기관은 늘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당연히 인권위의 감시와 견제대상이 되어야 한다. 특히 교정시설과 수사기관을 거느리고 있는 법무부라면 더더욱 인권위의 감시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법무부가 인권위의 상위기관이자 감독기관이 된다면 인권위가 독립적으로 제역할을 수행할 수 없음은 명약관화하다. 법무부가 진정 인권을 옹호하고자 한다면 인권위의 상위기관이 되어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노력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관할 하에 있는 검찰과 교정 시설에서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를 구제하고 예방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7. 결론

현 정부는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병행”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국정지표의 질반에 해당하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인권위가 제대로 설치되어 인권침해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한과 눈물을 씻어줄 수 있어야 하며, 인권교육과 인권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의 인권문화를 진작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현 인권법안은 이러한 기능을 전혀 수행할 수 없는 인권위 설치를 의도하고 있으며, 유엔이 제시하고 있는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인권위가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립된 국가기구로 설치되어야 한다. 국가기구로 설치될 때에만 인권위가 제대로 기능하는 데 필요한 위상과 권한, 독립성과 자율성 등을 부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법인의 형태로는 이러한 기능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인권위를 국가기구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많은 법률전문가들 역시 현재의 인권법안이 법체계상 매우 기형적인 형태의 법인을 상정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법인으로서는 아주 이례적인 형태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법체계상으로도 기존 법체계를 왜곡시키면서까지 법인의 형태를 고수하기보다는 국가기구로 인권위를 설치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자료 2〉

국민에게 올바른 국가인권기구를! 날치기 당정협의를 규탄한다!

우리는 오늘 국민의 희망을 무참하게 짓밟은 날치기 당정협의를 규탄하기 위하여 이곳에 모였습니다.

21세기를 바라보며 어두운 과거와의 단절을 이루어냈다던 새 정권은 곰팡이처럼 피어나는 모략으로 얼룩져 있다. 저들은 그것을 '협의'라고 하고 '정치'라고 부른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밀실공작'이라고 부른다. 아니 서슴없이 '모략'이라고 부른다. '인권 대통령'의 이른바 '민주개혁'은 지금 깊이 병들어가고 있다.

지난 22일 밤, 정부와 여당은 근 1년동안이나 끌어온 국가인권위원회 설립논의에 기습적으로 마침표를 찍고 '최종합의'에 이르렀다. 이 '최종합의'를 '날치기'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주저함이 없다. 국가인권위원회 설립논의의 공론화를 줄기차게 요구했던 우리 민간 인권단체들의 주장이 완벽하게 무시된 채 정치권의 밀실에서만 논의가 이루어지고 드디어 '최종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것은 '날치기'였으며, 취임한 지 1주일밖에 안되어 국가인권위원회가 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국민회의 신임 정책위 의장이 '최종합의'의 당사자였다는 점에서 그것은 '날치기'였으며, 결코 인권침해를 받을 염려 없는 집권여당세력과 과거 인권유린의 원흉이었던 검찰세력이 '인권'을 들먹이며 야합을 했다는 점에서 그것은 '날치기'였으며, 그리고 결국 기형의 국가인권위원회를 낳았다는 점에서 그것은 분명한 '날치기'였다. 도덕도 정치도의도 내팽개친 정치인들의 이와 같은 작태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다.

독립성과 실효성을 두 기둥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은 우리가 진정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에 이르기 위하여 반드시 이루어야 할 필수적 과제이다. 바로 이와 같은 독립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에 맞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준)헌법기구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일차적으로 법무부는 이런 위상을 가져야 할 국가인권위원회를 자신의 산하기구로 만들기 위한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왔으며, 그것이 여의치 않은 지경에 이르자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을 최대한 낮추기 위한 방해공작을 일삼아왔던 것이다. 이와 같은 법무부의 후퇴를 '양보'라고 부르는 언론의 몰지각함에 우리는 서글픔과 허탈감을 금할 수가 없다. 오랫동안 법무부 안에 맞섰던 김원길 정책위 의장의 경질을 기다렸다는 듯이 타결된 이번 당정협의의 결과는 이와 같은 법무부의 목표가 대체로 관철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거기에는 법무부의 방해공작으로 인하여 만신창이가 된 나약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모습이 있을 뿐이다.

예산 신청에 있어서 법무부의 간여를 배제한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법무부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당정의 '최종합의'에 의한 국가인권위원회 안은 여전히 법무부안의 골격을 따르고 있음이 명백하다. 인권위의 기본틀을 결정하는 과정을 법무부 장관이 틀어쥐는 국가인권위원회, 그 결정사항을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사건에 대하여 '시정권고와 의견표명권' 밖에 갖지 못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인 그 자체의 직원을 갖지 못하고 '뜨네기 직원'만으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형법으로도 다룰 수 있는 9가지의 인권침해행위 밖에 조사할 수 없는 국가인권위원회… 도대체 이런 나약한 (준)현법기구가 어느 세상에 존재한단 말인가! 어째서 이런 국가인권위원회가 "국제적 기준"에 맞다는 말인가!!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모든 중요한 정책은 널리 국민에게 홍보되고 공개된 토론판정을 수없이 거치면서 수립되어야 한다. 우리는 바로 이 점을 누누이 정치권에 요구했던 것이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설립논의는 철저히 공개를 거부한 정부 여당과 법무부 상이의 밀실협상으로 진행되었다. 최근에 이르러 신임 장영철 정책위 의장은 취임직후 우리의 거듭된 면담요청을 묵살하면서 기습적인 '최종합의'를 이루기 위하여 법무부와의 밀실협의를 진행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이 땅의 정치인들이 도덕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민간 인권단체를 철저히 따돌림으로써 성립시킨 국가인권위원회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국민의 눈을 피해가며 정치인의 야합으로 만들어진 국가인권위원회가 과연 정치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자유로운" 기구가 될 수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앞장서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과정에 개입하는 나라는 이제까지 한 나라도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이번 당정협의에서의 '최종합의'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런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냉소와 체념의 대상이 될지언정 결코 희망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3월 22일의 날치기 당정협의의 결과는 철회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이 논의를 모든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진정 국민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창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모든 고난을 견디며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1999년 3월 26일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족 단체 공동주진위원회

〈자료 3〉 민주화운동원로 30인의 공동성명

'인권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구현을 소망하며 고난의 세월을 열심히 투쟁했던 우리는 반세기만에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룬 김대중 대통령에게 다름이 아닌 바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구현을 기대했다. 우리는 이 나라가 '인권 탄압국'에서 '인권 선진국'으로 변신할 것을 기대했으며, 민주화로 이행하는 국가들의 모범이 될 것을 기대했으며, 그럼으로써 이 땅에 인권의 새 시대가 열릴 것을 기대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인권법 제정과 인권위원회 설치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그 추이를 지켜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동안 법무부의 주도로 진행된 논의과정에 때로 우려하면서도 말을 아껴온 것은 군사독재시절에 무참히 인권을 짓밟힌 경험을 간직하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설마" 하면서 사태를 지켜보던 우리는 이제 인권단체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인권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제는 우리가 나서서 말을 해야 한다고 믿는다.

무엇보다도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인권법안은 그 자체가 되는 철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즉 그것은 인권보장의 최종책임과 권한을 지닌 국가기관이 법무부라는, 우리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볼 때 너무도 낯설고도 잘못된 전제에서 시작함으로써 인권위원회에는 '특수법인'이라는 틀을 부여하고 있다. '특수법인'이 그 성격상 주무 국가기관인 법무부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따라서 '특수법인'의 틀을 유지한 채 독소조항을 몇 가지 제거한 데 지나지 않는 정부여당의 인권법안으로는 나약한 인권위원회만이 가능할 뿐, 실제로 억울한 이들의 눈물을 씻어주고 소외된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알찬 인권위원회는 불가능하다. 도대체 현재 인권법안에 표현되는 나약한 인권위원회가 과거의 수많은 의문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리라고 누가 믿을 수 있겠단 말인가?

다음으로 우리는 인권법 제정과 인권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국민들이 관심도 없으며 기대도 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 주목한다. 특히 소외계층의 관심과 기대가 전무하다시피 한 현실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는 지금까지의 입법논의가 일부 정부여당 관계자의 밀실담합 수준에서 맴돌았을 뿐, 일반 국민 속으로 널리 확산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 차원에서 단 한 차례의 공청회가 열렸을 뿐이라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렇듯 국민의 참여가 배제된 폐쇄적 입법과정으로는 제대로 된 인권위원회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국민적 관심과 기대를 모으지 못한 채 정권의 일방적 시혜로 주어지는 인권위원회란 그 내용과 실질이 아무리 홀륭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유명무실해지는 법이라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믿음이다. 하물며 애초에 약체기구를 겨냥해서 만들어진 법무부안을 부분 수정함으로써 설치될 인권위원회의 경우 국민의 냉소만을 자아내기가 십상일 것이다. 우리는 바로 이런 사태를 우려하는 바이다.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이 아시아의 인권지도자로서 우뚝 서주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이것은 동시에 김대통령에 대한 국제사회의 엄연한 기대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번 인권법안의 국무회의 통과라는 사건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이 이끄는 '국민의 정부'가 과연 올바른 인권위원회를 설치할 의지가 있는지를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민간단체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국가권력에 의해 급조된 제도가 일반적으로 득 보다 실을 더 많이 가져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와 같은 판단 아래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 밀실에서 졸속으로 짜집기된 인권법안을 무리하게 국회에 상정함으로써 시민사회의 불신과 저항을 초래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인권법 제정의 취지에 걸맞는 민주적 참여와 토론의 기회를 국민에게 전면 제공함으로써 정부여당안을 우리 실정에 맞게 대폭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일대 용단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999년 3월 31일

고영구 권영길 강만길 김관석 김금수 김동완 김상근 김성수 김승훈 김중배
김진균 리영희 박순경 박용길 박정기 박형규 서영훈 유현석 이돈명 이소선
이재정 이창복 이해동 이효재 조준희 최영도 한상범 한완상 함세웅 흥근수

〈자료 4〉

우리는 정부의 인권법안을 거부한다! -18개 단체 인권활동가 연합 단식농성에 들어가며-

지난 3월 30일, 수많은 인권단체들의 반대의견을 묵살한 채 이른바 ‘인권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인권유린의 현장을 뛰어다니며 인권 피해자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삼아온 우리 18개 단체 인권활동가들은 지금 정치인들 사이의 밀실홍정으로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져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이 ‘인권법’안을 거부하기 위하여 단식투쟁에 들입한다.

50년만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던 바로 그 날 김대중 대통령은 상기된 얼굴로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였다. 가슴 밑바닥에서 올라온 그 때의 뜨거운 감동을 우리는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 그것은 바로 상처투성이인 고난의 시대를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애타게 불렀던 이 나라의 참된 이상이었다.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설치는 그와 같은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개혁’ 과정에 다름이 아니다. 어떤 정치권력에도 간섭받지 않고, 높은 권위와 강한 권한을 가지고 오로지 억울하게 인권을 유린당하는 약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국가인권기구의 탄생은 곧 권력이 횡포를 부리는 시대가 막을 내리고 약한 자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새시대가 열림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나간 1년동안 우리의 기대는 점점 실망으로 변해왔으며, 그 실망은 다시 눈덩이처럼 불어나 바야흐로 커다란 분노로 변하고 있다.

처음부터 밀실에서 ‘인권법’안을 기초한 검사들은 소외된 자들을 권리의 횡포로부터 보호하기는커녕 그 법안에서 국가인권기구를 법무부의 산하기구로 만들려는 엉뚱한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으며, 민간단체의 반대에 부딪쳐 그것이 여의치 않게 되자 국가인권기구의 위상과 권한을 최대한 약화시키기 위한 온갖 공작을 일삼아왔다. 그 결과 정부 법안에 모습을 드러낸 국가인권기구는 실제로 억울한 이들의 눈물을 셧어주고 소외된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인권기구가 아닌 만신창이의 나약한 정권 홍보용 장식품으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인권대통령’의 개혁 중 개혁은 지금 실패로 끝날 위기에 처하고 있다.

인권이 짓밟히는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인권 피해자들과 살 맞대고 사는 삶. 이것을 우리 인권활동가들은 천직으로 삼는다. 이런 우리가 국가인권기구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당연히 현실의 인권피해자들이 이 인권법으로 짓밟힌 인권을 얼마나 구제 받을 수 있느냐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가인권기구가 애초에 짓밟힌 자들, 약한 자들의 인권을 구제할 임무를 맴 기구라면 우리는 왜 검사가 초기부터 배타적으로 이 국가인권기구 설치는의의 주도권을 움켜쥐어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다. 세상이 얼마간 변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검사가 짓밟힌 자, 약한 자들의 편에 서서 이들의 아픔을 이해하리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일반 국민의 참여 없이 검사가 밀실에서 입안하여 정치권의 담합으로 이루어진 정부의 ‘인권법’안을 ‘인권’의 이름으로 거부한다.

정부의 '인권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우리는 '인권법' 논의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모든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진정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실현시킬 수 있는 국가인권기구를 창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힘을 다하여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1999년 4월 7일

18개 단체 인권활동가 연합 단식농성단

• 천주교인권위원회 : 오창익/ 고상만/ 맹주형/ 권수진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남규선/ 채은아/ 송소연/ 이상희/ 김일숙 • 인권운동사랑방 : 서준식/ 유해정/ 최은아/ 유점열 • 등성애자인권연대 : 임태훈/ 양지용/ 정병선/ 신길용 • 한국성폭력상담소 : 정유석 • 청년진보당인권위원회 : 이창수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김영옥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 이윤주/ 김미영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김수미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 정주연 • 한국국제문제연구소 : 이진원 • 불교인권위원회 : 도관 •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 정종권 • 참여연대 : 차미경 • 한국여성민우회 : 윤정숙 • 서울대총학생회인권위원회 : 이석민 • 한국여성단체연합 : 노주희 • 추모단체연대회의 : 구선주

〈자료 5〉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 18개 단체 인권활동가 34인이 7일간의 단식투쟁을 마치며 -

김대중 대통령님.

따사로운 봄 햇살 아래 개나리꽃 활짝 피고 거리를 오가는 젊은이들의 웃차림도 경쾌한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우리는 무거운 겨울옷을 걸치며 7일 동안의 단식투쟁을 감행했습니다. 정치인들의 밀실총정 끝에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인권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던 바로 그 날 이후 우리는 분노와 실망을 되씹으며 단식투쟁을 결심했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하여 쓸모 있는 국가인권기구의 실현을 바라던 우리의 노력이 정치인들의 책략에 허망하게도 유린당한 그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분명 자신을 희생하는 투쟁뿐이었습니다.

실망감에 휩싸이면서, 가슴 밑바닥에서 치밀어오는 분노를 느끼면서, 우리는 대통령께서 그 어려운 선거에 승리하셨던 감동적인 날을 떠올리곤 합니다.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던 그 약속은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군사정권에 의하여 처참한 고난을 받은 분의 입에서 울려 나왔기에 그저 '말'이 아닌 '약속'일 수가 있었습니다.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는 인권 부재의 어두운 시대를 오랫동안 겪어야 했던 우리 국민에게 바로 희망 그 자체였으며, 인권 피해자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삼아 살아가는 우리 인권활동가들에게 새 시대의 예감 바로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날의 감동은 환상이었다고. 그 날의 약속은 거짓이었다고. 그날의 희망은 부질없는 꿈이었다고. 그 날의 예감은 착각이었다고….

국가인권기구 설립논의가 희망의 색깔에서 실망의 색깔로, 실망의 색깔에서 다시 분노의 색깔로 변해온 지난 1년간은 바로 당신에 대한 우리의 희망이 실망으로 변하고 그리고 다시 분노로 변하는 과정에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공안검사 출신인 법무부 장관의 온갖 모략과 억지와 고집 속에서 빚어진 이른바 '인권법'안이 바로 당신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순간 우리는 늄름했던 대통령께서 실은 무기력하고도 무능한 분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에 대하여 처음으로 치미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진정 믿고 계십니까?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그 허약하고 비뚤어진 이른바 '국민인권위원회'가 실제로 수많은 억울한 이들의 눈물을 셧어주고 소외된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진정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제 대통령께서 이 사회를 인권대통령답게 '개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쳐 버린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인권을 사랑하는 우리 젊은 인권활동가들이 이제 당신을 '인권대통령'이라고 부를 수 없게 된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대통령님.

언젠가 당신이 다른 아무 것도 아닌 “인권대통령으로 남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감히 말씀 드립니다. 지금 당신은 분명히 ‘인권대통령’으로 남을 자격이 없습니다. 인권개혁의 완강한 결림들 박상천 법무장관을 두둔하는 당신은 ‘인권대통령’으로 남을 자격이 없으며, 독립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할 강한 의지가 없는 당신은 ‘인권대통령’으로 남을 자격이 없습니다.

대통령님! 박상천 법무부 장관을 해임하십시오. 그 악독했던 군사정권 시절의 법무부 장관들과 별반 차별성도 없는 박상천 법무부 장관을 지금이라도 해임하십시오. 그리고 지난 3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인권법’안을 누구보다도 먼저 당신 스스로의 손으로 철회하십시오. 그리하여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인권활동가들로 하여금 당신을 ‘인권대통령’이라고 부르게 해주십시오.

김대중 대통령님.

우리 젊은 인권활동가들은 인권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인권에 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 넣어 줍니다. 우리 젊은 인권활동가들은 우리 사회의 수많은 인권 피해자들과 함께 숨을 쉽니다. 그 수많은 피해자들은 우리와 함께 숨을 쉽니다. 우리 젊은 인권활동가들은 이 땅의 인권운동의 전통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 전통에서 힘과 용기를 길어 올립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힘과 용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올바른 국가인권기구를 만들기 위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올바른 국가인권기구를 세우고야 말 것입니다.

1999년 4월 13일

명동성당에서 단식투쟁을 마치며
18개 단체 인권활동가 연합단식농성단 일동